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한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16

발의연월일: 2015. 11. 6.

발 의 자: 이한구・박병만・정창일 의원 (찬성자 4 명)

□ 제안이유

○ 인천시에서 공정무역 활성화와 소비시장 확대를 위하여 공정무역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공정무역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따라서 공정무역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공정무역 사업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어문 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정무역에 대한 기본원칙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의2)

○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의2)

○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의3)

○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등 공정무역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공정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정무역마을 운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의2)

□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공정무역″이라 함은”을 “″공정무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공정무역단체″라 함은”을 “″공정무역단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착한무역″이라 함은”을 “″착한무역″이란”으로, “북한과”를 “북한과 ”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정무역마을″이란 공정무역 상품을 사용하고, 지역사회에서 공정무역 상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인 단체 등을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본원칙) 인천광역시는 공정무역 지원 및 활성화 시책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공정무역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구축

2.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 장려

3. 공정무역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공정무역제품 구매 접근성 제고

제3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의3(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무역의 현황과 전망
2.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방향
3.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4. 공정무역 민·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공정무역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행정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 마케팅 사업

3.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

4.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및 지원 사업

5. 공정무역마을 운동 사업

6.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중 “호선한다”를 “선출한다”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제4호 중 “제·개정”을 “제정·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위원회에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또는 종료시 30일내에”를 “또는 종료 시 30일 내에”로 한다.

제17조 중 “계리하여야”를 “처리하여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공정무역마을 운동) 시장은 공정무역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공정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정무역마을 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뜻은 ---------- -----.
1. "공정무역"이라 함은 대화와 투명성, 상호존중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대안무역으로서 특히 제3세계(북한포함)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보다 좋은 무역조건을 제공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무역을 말하며, 제3세계 공정무역과 대북 착한무역을 총칭하여 공정무역이라 한다.	1. "공정무역"이란 ---------- ---------- ---------- ---------- ---------- ---------- ---------- ---------- ---------- ---------- ---------.
2. "공정무역단체"라 함은 제6조에 따라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장이 선정한 비영리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공정무역단체"란 -------- ---------- ---------- ---------- --------.
3. "착한무역"이라 함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북한과하는 무역을 말한다.	3. "착한무역"이란 ---------- ---------- 북한과 ---------- ----------.
<신 설>	4. "공정무역마을"이란 공정무역상품을 사용하고, 지역사회에

	서 공정무역 상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인 단체 등을 말한다.
<신 설>	제2조의2(기본원칙) 인천광역시는 공정무역 지원 및 활성화 시책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공정무역 이해관계자 상호간의 신뢰와 존중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구축 2.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 장려 3. 공정무역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공정무역제품 구매 접근성 제고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정무역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 ---------- ---------- ---------- --- 따른다.
<신 설>	제3조의2(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

	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의3(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무역의 현황과 전망 2.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방향 3.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4. 공정무역 민·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무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공정무역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

역단체에 대하여 각 호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하는 경우 행정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단체들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판로 개척 등 행정적 지원.	2. 공정무역 마케팅 사업
<신 설>	3.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
<신 설>	4.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및 지원 사업
<신 설>	5. 공정무역마을 운동 사업
<신 설>	6.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공정무역 사업) ① 공정무역단체는 저개발국가의 생산자가 생산한 물품을 윤리적 가격으로 수입하여 판매 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할 수 있다.	<삭 제>
② 공정무역사업은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3세계 공정무역을 통하여 발생된 이익금으로 제3세계 국가의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사업 2. 착한무역을 통하여 발생된 이익금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사업 3. 시민들이 윤리적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⑤ (생 략)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선출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 3. (생 략) 4. 공정무역 인증 마크 제·개정 및 무상사용단체 선정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 제정·개정 ---------- 5. ---------- 회의에 부치는 ----------
제16조(보고 및 평가 등) ① (생 략)	제16조(보고 및 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정무역단체의 장은 공정무역사업(보조금사업 포함) 완료 또는 종료시 30일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또는 종료 시 30일 내에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별도의 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정무역단체의 장은 그 교부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7조(별도의 계정) ---------- ---------- ---------- ---------- ---------- 처리하여야 ------.
<신 설>	제19조의2(공정무역마을 운동) 시장은 공정무역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공정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정무역마을 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

관련 법령 검토와 발췌 사항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련 법령 발췌 사항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안 중 제2조의2(기본원칙), 제3조의2(시장의 책무),제3조의3(계획수립) 등은 공정무역 지원 사업의 기본적인 사업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됨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안 중 제2조의4(공정무역마을) 및 제19조의2(공정무역마을 운동)은 구체적인 추진 목적 및 방향에 따라 비용이 발생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단계에서 비용추계는 어려움

4. 작성자

경제산업국 사회적경제 과장 고태성